

#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3,012,746	10,290,382
일반회계	317,911,131	9,537,334
특별회계	25,101,615	753,048
기타특별회계	25,101,615	753,04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12,554	24,377
주택사업특별회계	549,888	16,49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096,733	32,9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46,318	28,39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65,251	13,958
주차장특별회계	591,698	17,751
수질개선특별회계	20,221,249	606,63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17,924	12,53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44,52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입한도액은 9,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하며, 이 경우 간주처리 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월가능하며, 다만 군비부담율이 수반되는 보조금의 경우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